

공산품 품질관리법 시행령(초)

제1조(품질표시상품)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표시하여야 할 상품(이하 “품질표시상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검사지정상품)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등급사정상품)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사정할 상품은 별표3과 같다.

제4조(검사의 면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등급사정결과 그 품질관리상태가 우수한 등급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에 있어서 검사율을 감소하거나 검사항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5조(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품질표시상품을 제조하는 업계의 대표 및 공산품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탁한 자가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품질표시상품의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장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야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상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령은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 질 표 시 상 품

부 문 별		상 품 별
1. 섬유제품	가. 사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마(아마 및 저마)·비스코스섬유·동암모니아섬유·아세테이트섬유·나일론섬유·폴리비닐알콜계섬유·폴리염화비닐리덴계섬유·폴리아크릴니트릴섬유·폴리에스터계섬유·폴리프로필렌계섬유·폴리청화비닐리덴계섬유 및 폴리우레탄계섬유인 사에 한한다.
	나. 직 물	위의 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메리아스생지 및 레스생지에 한한다.
	다. 피복 및 기타 섬유제품	가 호의 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메리아스제품 및 레스제품과 전호의 직물 메리아스생지 또는 레스생지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전기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개성복(상의, 하의) 메리아스외의, 스커트, 드레서, 와이셔츠류, 블라우스, 사무복, 작업복, 코트류, 잠옷, 스웨터류, 내의, 양말, 손수건, 장갑, 모포, 시이트, 타올, 솔, 커튼, 머플러

(별표 2)

검 사 지 정 상 품

1. 섬유제품	가. 사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마(아마 및 저마)에 한한다. 비스코스섬유·동암모니아섬유·아세테이트섬유·나일론섬유·폴리비닐알콜계섬유·폴리염화비닐리덴계섬유·폴리아크릴니트릴계섬유·폴리에스테르계섬유·폴리프로필렌계섬유·폴리청화비닐리덴계섬유 및 폴리우레탄계섬유인 것에 한한다.
	나. 직 물	위의 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메리아스생지 및 레스생지에 한한다.

	다. 피복 및 기타 섬유제품	가 호의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메리야스제품 및 레스제품과 전호의 직물 메리야스생지 또는 레스생지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전지가열 식의 것을 제외한다) 개성복(상의, 하의), 메리야스외의, 스커 트, 드레스, 와이셔츠류, 블라우스, 사무복, 작업복, 코트류, 스웨터류, 내의 양말, 모포, 타올
--	-----------------------	---

(별표 3)

등 급 사 정 상 품

부 문 별		상 품 별
1. 섬 유 제 품	가. 사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마(아마 또는 저마에 한한다). 비스코스섬유·동암모니아섬유·아세테이트섬유·나일론섬유·폴리비닐알콜계섬유·폴리에스테르계섬유·폴리아크릴니트릴계섬유·폴리염화비닐리덴계섬유·폴리프로필렌계섬유·폴리청화비닐리덴계섬유 및 폴리우레당계섬유인 것에 한한다.
	나. 직 물	위의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메리야스생지 및 레스생지에 한한다.
	다. 피복 및 기타 섬유제품	가호의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메리야스제품 및 레스제품과 전호의 직물 메리야스생지 또는 레스생지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전기가열 식의 것을 제외한다). 스커트, 와이셔츠류, 블라우스, 스웨터 류, 내의, 양말, 타올